

법령·제도개선 건의사항 목록

도시공간본부

총 3건 건의

목 록

연 번	건의제목	건의부서
1	용적이양제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 건의	도시계획 상임기획과
2	폐교재산 무상이관(교육청→지자체)을 통한 공공활용 촉진	시설계획과
3	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(해제) 기준 개선	시설계획과

법령 · 제도개선 건의사항

건의 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	건의내용	소관부처
<p>1. 용적이양제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 건의 (도시계획상임기획과, '25. 8.22.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현 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문화유산 주변지역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높이제한 등 중복적 규제를 받는 지역은 용도지역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적의 일부를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임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문제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중복규제지역은 높은 개발압력에도 불구하고 자율적 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으며,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 여건상 지원에도 한계가 있음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건의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양도지역과 양수지역을 연계하여 용적률을 이양할 수 있도록 허용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관련 규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토계획법 제52조 등 	<p>국토교통부</p>

건의 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	건의내용	소관부처
<p>2. 폐교재산 무상이관 (교육청→지자체)을 통한 공공활용 촉진 (시설계획과, '25. 8.22.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현 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폐교 발생 가속화, 공공 유희시설 방치 장기화 - 교육청과 지자체는 동일 자치단체로 「공유재산법」 상 회계간 무상이관 가능하나 폐교 소유주체인 교육청의 의사결정에 따라 미운영 중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문제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개발사업에 의해 학교용지 기부채납으로 확보, 교육청에 소유권 귀속, 교육 외 지역사회에 필요한 용도 등 다양한 활용 근본적 한계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건의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폐교 발생 시 폐교재산을 관할 지자체로 무상이관 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 - 폐교재산에 한해 지자체 회계간 재산이관 시 무상 원칙, 지자체-교육청간 협의를 통해 유상이관 가능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관련 규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유재산법 제12조 ○ 폐교활용법 제4조의2 	<p>행정안전부</p>

건의 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	건의내용	소관부처
<p>3.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(해제) 기준 개선 (시설계획과, '25. 8.22.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현 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도시자연공원구역은 효율적인 도시공원 운영을 위해 수요에 따라 공원(도시계획시설)으로 변경·재지정이 필요하나, 공원구역 변경이 제한되어 있어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<p>※ 도시공원(공원녹지법 제2조): 도시자연공원 구역 및 공원(도시계획시설)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문제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(해제)은 임상이 훼손되지 않은 한 공원(도시계획시설) 변경 불가하여 공원구역 지역에서는 공원 조성이 영구적으로 불가함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건의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도시공원 내 도시관리계획 간 상호 변경이 가능하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(해제) 기준 개선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관련 규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원녹지법 제25조 	<p>국토교통부</p>